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동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 안 880

발의년월일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: 강동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경영, 김정환, 김호평,

박순규, 양민규, 이경선, 이병도, 이영실, 전병주,

정재웅, 홍성룡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.
- 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·출연기관에 한하여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,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,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이 법의적용을 받지 않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에도불구하고 예산 심의·확정, 결산의 승인 등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없는 실정임.

○ 따라서 본 조례에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해서도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로서 '동의'를 얻도록 명확히 규정하고,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가. 출자·출연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(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).
- 나. 출자·출연의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(안7조의2 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출자·출연의 동의) ① 시장은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출자·출연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2조의4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예산안 제출 등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·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	제7조(예산안 제출 등) ① ~ ② (현 행과 같음)
제출하여야 한다.	제7조의2(출자·출연의 동의) ① 시장 은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따라 출 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. ② 제1항의 출자·출연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 영에 관한 조례」제22조의4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